

## 6. 審査保留案의 要旨

- 우리구는 제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현재 지역경제 사정도 어려운 시기이어서 급히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함.

## 7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가결함)

# 200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 審 査 報 告 書

2005. 6. 15  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 
재무건설위원회

### 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2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(2005. 6. 15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 연 수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명륜3가 1-29번지 위치에 현재 평면주차장으로 같이 사용중인 재정경제부 소유 명륜3가 1-806번지와 명륜3가 1-269번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함으로써 주차 및 토지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### 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### 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### 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  
 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## 질 문 답 변 서

(지역경제과)

| 질문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승혁의원(재무건설위원회의원 : 송인2동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【보충질문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종로구는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규칙을 특별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【답 변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우리구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구청장에게 위임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액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,동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로서 규정한 내용은<br>△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<br>△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<br>△연결도로,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그 밖의 이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관할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따라서 문화재보호와 안전관리등(가스판매소와의 이격거리)을 제한하는 동규칙의 특별규칙 제정건은 액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 입니다.<br>지정 문화재의 안전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을 문화진흥과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